



## 5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### □ 제정 취지(필요성)

- 회화면 삼덕리의 옛 경상남도관광안내소를 생태관광 마을공방으로 조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 내용 검토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3조)
  - 입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태관광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 임의 해석을 방지함.
- 기능(안 제4조)
  - 생태관광 공방 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능으로 규정하여 기능 범위 내에서 생태관광 공방을 운영하도록 함.
- 운영시간 및 휴관일(안 제5조)
  - 생태관광 공방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지정 명시함.
- 관리 및 운영 위탁(안 제7조)
  - 민간 참여를 위한 공방 관리 및 운영사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편의시설 설치 운영(안 제8조)
  - 생태공방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산품·기념품 판매점, 매점 등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### □ 종합의견

- 생태관광 공방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필요에 따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집행부에서는 생태관광 공방 운영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고성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9. 13. 원안가결